

#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호평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4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
발 의 자 : 김호평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송정빈, 김용석, 김재형, 고병국,  
한기영, 강동길, 이동현, 이준형,  
정진술, 정진철, 최 선, 오현정  
의원(12명)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에 있어서 검사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자료제출 지연·누락에 따른 검사의 비효율성과 단순 사실확인 자료제출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, 결산검사위원에게 지방재정관리시스템(이호조)의 열람 등 접근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시장은 결산검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접근권한을 검사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2항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규정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, 「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, 「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결산검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63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접근권한을 검사위원회에 부여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검사협조) 시장 등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8조(검사협조) ① 시장 등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시장은 결산검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63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접근권한을 검사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.</u></p>